

# 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             |
|-------|-------------|
| 발의연월일 | 2019. 4. .  |
| 발 의 자 | 장미경 의원 외 7명 |

# 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장미경 의원 대표 발의)

|     |  |
|-----|--|
| 의 안 |  |
| 변 호 |  |

발의연월일 : 2019. 4. .

발 의 자 : 장미경·강승수·권재욱·김재우·박교상  
안주찬·양진오·장세구 의원(8명)

## 1. 제안이유

- 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발전으로 인한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생명존중 의식이 부족하여 학대나 유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육·관리되고 있어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나. 이에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나. 주민의 참여와 협력 및 소유자 등의 의무(안 제3조 ~ 제4조)
- 다.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라. 반려문화 조성 및 지원(안 제6조 ~ 제7조)

### 3. 조 례 안 : 붙임

###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반려동물복지”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주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된 동물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수면 보장 및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6조(반려문화 조성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교육·홍보
2.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8조(반려동물 자료수집 및 관리)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

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 요인

- 위 조례안 제7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7조)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재정지원사업은 앞으로 세부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할 사항으로 예산의 소요는 예정되나 재정의 추계는 어려움
-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 내 용       | 산출내역            | 금액     |
|-----------|-----------------|--------|
| 합 계       |                 | 20,000 |
| 동물사랑 문화축제 | 20,000,000원×1개소 | 20,000 |

## 4. 작성자

- 축산과 동물보호계 정호영(480-5842)